

의안 번호	1909	【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 의 일 자 : 2022. 2. 4.(금)
- 나. 발 의 자 : 문희성의원 외 6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3. 4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3. 17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문희성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기본이념 및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, 제4조)
-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~ 제12조)
-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 ~ 제14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하성천)

-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